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2024.	
연	월 일	(제	회)

의 결 사 항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유료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라디오방송에 대해서는 역외 재송신 승인제를 폐지하여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 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제 개선(안 제2조제3호·제9조제5항 등)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을 하려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하여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고, 그 밖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로 진입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 개선(안 제78조제4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라디오방송 등에 대한 역외 재송신 승인제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라디오방송 등에 대한 재송신 승인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 법률 제 호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9조제5항 본문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 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를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실시간으로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허가·승인 및 등록의 절차"를 "허가·승인·등록 및 신고의 절차와 신고의 수리 절차"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을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

을 말한다)이 각각 3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편집실(음성·영상·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 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 3.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제13조제1항제2호 중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를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을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을 "등록 또는 신고를"로 한다.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변경등록을"을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0항 및 제11 항"을 "제10항,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한"을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을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등록한"을 "등록하거나 신고수리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변경등록을"을 "변경등록·변경신고

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한"을 "등록 또는 신고한"으로, "등록을"을 "등록 또는 신고수리를"로 한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5항에 따른 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제69조제4항 및 제5항 중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을 각각 "등록을 하거나 신고한 주된 방송분야"로 한다.

제7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지상파방송(텔레비전방송에 한한다) 동시재송신"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2호 중 "이 법 또는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을 "이 법 또는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 또는 신고수리 요건"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9호 단서 중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을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3 -----목의 자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 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 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 은 자 거나 신고를 한 자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4. ~ 27. (생략) 4. ~ 27. (현행과 같음)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①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방송채널사용사업 · 전광판방 ⑤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 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 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방송채널사용 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 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 하되, 실시간으로 텔레비전방송 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ㅣ 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

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현 행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 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⑥ ~ ⑪ (생 략)
- ②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승인 및 등록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 록요건) ① (생 략) <신 설> 개 정 안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_\_\_\_\_

----. <후단 삭제>

- ⑥ ~ ① (현행과 같음)
- ①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u>허가·승인·등록 및</u> 신고의 절차와 신고의 수리 절 <u>차</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 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 한 자본금을 말한다)이 각각 3

혅 햀 개 정 아 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 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 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 다.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 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 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편집 실(음성・영상・음향 등을 편 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 용하지 아니할 것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 제13조(결격사유)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에 따라 허가・승인 2. 제18조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제13조제3 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 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 (제1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 현 행

여 <u>허가·승인 또는 등록이</u>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제 2항·제3항·제5항·제6항·제 8항·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 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 1. ~ 7. (생략)

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 저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음악유 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 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u>제10항 및 제1</u>1항을 준용한다.

<b>⊸</b> 1]	71	۵)
개	정	아

호에	해당하여	<u>허가 •</u>	승인•
등록 :	또는 신고	수리가	취소된
	- 제외한1		
지나지	] 아니한	법인	

② (현행과 같음)

(3)	
	등
록 또는 신고를	

#### 1 ~ 7 (현행과 같음)

1. ∼ 7. (연행과 살음)
제15조(변경허가등) ①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J. O
<u>利10</u>
<u>항, 제11항 및 제12항</u> 을 준용한

혅 햀 개 정 아 다. 1. ~ 7.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②・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 등) ①방송사업자 또는 중 승인 등) ① -----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 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 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 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 또는 신고를 한 -----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자 하는 자는 이를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혅 햀 개 정 아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 등) ① -----송사업자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 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 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허가 · 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 따라 허가 · 승인 · 등록 또는 신 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고수리를 ----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 · 승인의 유 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 가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허 가 · 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 업 무정지,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 •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하 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5항에 따른
	신고수리(변경신고수리를 포
	함한다)를 받은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5
승인을 얻거나 <u>등록한</u> 날부터	<u>등록하거나 신</u>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고수리를 받은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	6
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u>변경등록을</u> 하지	<u>변경등록·변경신고</u>
아니한 때	<u>를</u> 하지 아니한 때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u>등록한</u>	<u>등록 또</u>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u>는 신고한</u>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u>등록을</u> 취소할 수 있다.	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혀 행

① ~ ③ (생 략)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 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 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 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 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① (생 략)

제78조(재송신) ① ~ ③ (생 략)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 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하려 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 정 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 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 거나 등록을 하거나 신고한 주 된 방송분야 -----

\_\_\_\_\_

-----.

⑤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 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 거나 등록을 하거나 신고한 주 된 방송분야 -----

\_\_\_\_\_

----.

⑥ ~ ① (현행과 같음)

제78조(재송신) ① ~ ③ (현행과 같음)

4 -----

\_\_\_\_\_

\_\_\_\_\_

지상파방송(텔레비전방송에 한한다) 동시재송신을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현 행	개 정 안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9조(시정명령등) ①과학기술정	제99조(시정명령등) ①
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	
원회는 소관 업무에 따라 방송	
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	
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ㆍ승인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ㆍ승인
<u>조건·등록요건</u> 을 위반하고	조건ㆍ등록요건 또는 신고수
있다고 인정될 때	<u>리 요건</u> 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제108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	19
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하거	
나 휴업한 자. 다만, 제9조제5	다만, <u>제9조제5</u>

현 행	개 정 안
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	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거나
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신고한
19의2. ~ 28. (생 략)	19의2. ~ 2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연 락 처

 $(044) \ 202 - 6541$